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87-230
<https://doi.org/10.29212/mh.2024..130.18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를 중심으로 -

문관현 | 연합뉴스 기자

- | | |
|-----|---------------------|
| 목 차 | 1. 머리말 |
| | 2.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
| | 3.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
| | 4. 대한민국 「메시지」 의미 분석 |
| | 5.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정세에 정통한 이승만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과 재래식 무기에 매달리는 대신 미국과 유엔을 대상으로 전시외교에 주력해 국난 극복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유엔과 백악관, 극동군사령부 등을 무대로 숨 가쁜 외교전쟁이 전개됐고, 남북한 격돌을 유엔사와 공산세력 대결 구도로 끌어올렸다. 6·25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출범한 유엔사는 전쟁수행의 주체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

서명에 성공했다. 출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1950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는 유엔사 창설의 근거를 제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3호 결의안 작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83호 결의안은 본문에서 “국제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라며 우리 정부의 전시외교 노력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 호소문의 핵심 문구들을 안보리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6월 26일자 대한민국 「메시지」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엔사 초기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가려졌던 대한민국의 노력과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 향후 유엔사에서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6·25전쟁, 대한민국 메시지, 안보리 결의안, 유엔군사령부, 전쟁지도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머리말

본 연구는 6·25전쟁 초기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유엔사를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 받지만,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오히려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무책임한 지도자처럼 비난받고 있다. 한국이 유엔사 설립에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작용했다면 유엔사에서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이하 한국 시간)¹⁾ 경무대에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황보고를 받은 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국제정세에 누구보다 정통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입을 위한 전시외교(戰時外交)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²⁾ 이승만 대통령

1) 대한민국 표준시(KST)가 미국의 동부(EST)보다 14시간 빠르지만 미국이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13시간차로 줄어든다. 한국 역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했기 때문에 미국 동부와 14시간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모든 시간대를 대한민국 표준시로 통일하며,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미국 또는 현지 시각을 병기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Q1=total&query1=%EC%9D%BC%EA%B4%91%20%EC%A0%88%EC%95%BD&x=0&y=0>(검색일: 2024.1.2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 81.

2)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지도자 역할”,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2, 162쪽.

은 전쟁 발발 6시간여 만에 총력전(Total War) 양상으로 전개 되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국가의 모든 능력과 각 분야의 전력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었다.

1950년 미국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 GNP의 40%를 차지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1947), 나토 창설(1949), NSC-68 봉쇄정책(1950) 등 외교국방정책으로 자유 진영의 리더로서 공산주의 정책에 맞서고 있었다. 미국은 유엔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유엔 집단안보의 발동·집행을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³⁾

독립운동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역량을 체감한 이승만은 폭풍처럼 거대하게 밀려드는 공산 파고를 넘을 힘은 일본 도쿄(東京)의 맥아더와 미국 워싱턴에 있음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렸고, 한국문제(The Korean Question)를 더 높은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구상을 번개처럼 밀어붙이고 있었다.⁴⁾ 그야말로 “이승만의 전쟁”을 “세계전쟁”으로 격상시켜 유엔의 역사상 최초로 집단안보체제를 가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6·25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군의 국지적인 공격에 대해 세계적인 규모로 해석을 부여한 사실이었다. 해리 S.트루먼 대통령은 만주(滿洲)와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사례와 똑같이 보았고, 북한군 배후에서 스탈린이 히틀러와 무솔리니, 일본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그것을 유엔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애치슨 국무장관 역시 미국의 위신과 억제전략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3) 박홍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1950) : 과정과 배경”,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39-40쪽.

4)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146-147쪽.

있었다.⁵⁾

전시 국력운용에 관한 지표로서 전쟁지도(Conduct of War)는 전쟁수행을 위해 요강의 제정, 무력 발동에 따른 통수권의 행사,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간의 통합, 조정, 효율적인 통제 등 전쟁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 총역량을 전승 획득에 집중시키도록 조직화하는 지도 역량과 기술을 의미한다.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첫날 전쟁지도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뒤 외교채널을 통해 유엔한국위원단(UNCOK)과 주한미국대사관, 극동군사령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주미한국대사관을 동원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하루에 두 차례 존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들여 전시대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이튿날 새벽 일본 도쿄(東京) 극동사령부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과 무초 주한미국대사에게 잇따라 긴급전화를 걸어 전쟁사태 발생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따지는 등 전쟁 초기의 흐름을 결정짓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⁶⁾

트루먼 대통령이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유엔대표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저항 없이 한국이 점령된다면 미국의 방위선 주변부터 약

5)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政夫),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 88쪽.

6) 남정옥, "6·25는 무엇이었나? : 전쟁조건 고루 갖춘 김일성 악조건 투성이의 한국과 이승만", 『한국논단』272, 2012, 54쪽 ;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50, *FRUS 1950*, Vol. VII, pp.147-148 ;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 Dodd and Mead Company, 1954), p.295.

소국들이 차례로 공산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상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방어지역이 아닌데도 미국이 6·25전쟁 개입을 결정한 것은 대소 봉쇄전략과 제3차 세계대전 방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안보리는 1950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 동안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켜 유엔사 창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소련이 중국의 대표권을 문제 삼아 불참한 상태였기 때문에⁷⁾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82호(S/1501)와 제83호(S/1511)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84호(S/1588)를 각각 발의하는 등 결의안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해달라고 권고한 제83호와 미군 주도의 다국적 통합군사령부 창설 구상을 제시한 제84호를 근거로 유엔사 깃발이 세워졌다.

〈표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결의 82호(S/1501) ⁸⁾	결의 83호(S/1511)	결의 84호(S/1588)
날짜 (한국시간)	6월 26일	6월 28일	7월 8일
국문 제목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 요청에 관한 결의	한국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	국제연합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
영어 제목	The reques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fied command
적용헌장	제39조, 제41조 잠정조치	제42조	

7)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p.222; Henry Kissinger, *On China*(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p.129.

8) 유엔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검색일: 2024. 01. 06)

	결의 82호(S/1501)	결의 83호(S/1511)	결의 84호(S/1588)
주요 내용	-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파괴로 규정 - 적대행위 즉각 중단 및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 - 대북 원조제공 중단 요청	- 무력공격 격퇴를 위해 한국에 원조제공 권고	- 미군 주도 다국적통합군 설치 권고 - 미국에 지휘관 임명권 부여 권고 - 유엔기 사용 승인
투표 결과 ⁹⁾	9(찬성)-0(반대)-1(기권)	7(찬성)-1(반대)-2(기권)	7(찬성)-0(반대)-3(기권)

* 출처: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등을 참조해 필자 작성

6월 28일 통과된 제83호 결의안에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지원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 5번째 문단은 “(안보리는) 유엔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¹⁰⁾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에 대한민국의 지원요청 행위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지만,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유엔에 호소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놓았던 미국은¹¹⁾ 국무부를 중심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대책회의를 거쳐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유엔사 창설 작업을 진

9) 1950년 당시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쿠바와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등 6개 비상임이사국 등 11개국 대표들로 구성됐다. 소련이 중국의 대표성 문제로 불참한 가운데 제82호 결의안에 유고슬라비아가 기권표, 제83호 결의안에 이집트와 인도가 기권표, 유고슬라비아가 반대표, 제84호 결의안에는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221-238.

10)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223-224. 필자의 견해에 따라 굵은체 글씨로 처리.

11)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20, 79쪽.

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6·25전쟁 초기에 ‘전쟁 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활발하게 전시외교를 벌였다는 사실을 조명한 국내외 연구사료와 학술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사안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한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통사적 의미를 부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박명림은 “(6월 26일) 14시에 다시 속개한 국회는 유엔과 미의회 및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며 “메시지에서 한국 의회(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세계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호소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¹²⁾

정진욱 역시「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행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중심으로」주제의 논문에서 국회가 “6·25 사변은 북괴의 불법 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 사태임을 지적하고 긴급 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비상시국에 관한 결의안과 38도선 인근 주민들에게 보내는 격려문이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으나 더이상 깊이 있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¹³⁾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지도를 집중 연구한 남정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과 유엔에 대해 북한군의 침략을 격퇴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을 뿐 어떤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설명하지 않았

12)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155쪽.

13) 정진욱, “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행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화랑대 논문집』12집 2권, 2019, 29쪽.

다. 또 “이승만이 무초 미국 대사와 맥아더 원수, 그리고 장면(張勉) 주미한국대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로 외교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강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해법 노력을 부각시켰지만 역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미국 대통령과 의회,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의 작성 주체를 국회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제헌 헌법상 이승만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실무진이 제출해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안자와 비준 주체를 혼돈한 배경으로 풀이된다.¹⁴⁾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 아침, 한국 국회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국회를 지원 요청의 주체로 묘사했다.¹⁵⁾

외무부 외교연구원은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연합 총회에 보낸 「멧세지」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대통령 및 하원에 보낸 1950년 6월 26일자 「멧세지」 전문을 각각 공개했다.¹⁶⁾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연합 총회와 미합중국 대통령 및 하원 등에 메시지를 전달한 주체로 각각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사가 창설될 때까지 한 달 동안 국제사회 활동을 기록한 『유엔연감』 1950년 판(*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과 유엔의 공식문서시스템(<https://documents.un.org>) 미국 국무부의 Office of the Historian 홈페이지(<https://history.state.gov>) 등의 1차 자료들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했다.

14) 이에 대해 본 논문 아래 제3장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라. 대한민국 「메시지」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에서 상세히 기술.

15)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동방문화인쇄사, 2004, 42쪽.

16)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1967, 317-318쪽.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한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 이승만의 전시외교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이튿날(6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메시지」 내용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했고, 마지막 5장에서는 유엔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2.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주한미군 철수는 신생 이승만 정부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¹⁷⁾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1949년 5월 17일 워싱턴의 최종 결정을 통보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한안보정책이다. 남한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를 요청한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없어도 좋다”고 강조했다.¹⁸⁾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필요한 군원과 방위전략 구상을 밝혔다. 전략구상은 첫째 대서양조약과 유사한 태평양조약(Pacific Pact)의 체결¹⁹⁾, 둘째 한미 또는 다른 국가를 포함한

17)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 395-402쪽.

18)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 출판부, 2002, 314쪽.

19) 미 상원과 하원은 1950년 7월 11일 북대서양방위동맹과 유사한 태평양군사조약 체결을 권고할 것을 전원일치 가결시켰다. 군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210-211쪽.

상호방위조약 체결, 셋째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가운데 미국의 우호 조항 재확인 등이었다.²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돋보인 업적은 외교 및 국가안보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보잘 것 없던 국가를 외교를 통해 건설하고 지탱해 나갔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받기 위한 승인외교, 6·25전쟁 당시 국가생존을 위한 전시외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최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6·25전쟁 기간은 대한민국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기간이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보인 외교적 역량은 대한민국 생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²¹⁾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이양과 한국군 단독 38선 돌파 명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작전지휘권 이양이야말로 미국의 전쟁 책임을 극대화시킨 대전략이었다. 미국을 압박해 참전 결정을 이끌어내고 미군 주도 유엔사에 작전지휘권을 넘긴 전략은 전시외교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구상했던 미국의 참전과 미군 주도의 전쟁 수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 6월 30일 미국의 (지상군) 참전결정이 있었으며, 전쟁에 참가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전체 병력을 공식적으로 지휘하게 된 것은 7월 25일이었다. 전쟁 승리를 위한 결정적 장치가 전쟁 발발 1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말해도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²²⁾

한미 양국군은 1950년 7월 1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

20) 미국은 자국의 정책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May 17, 1949), *FRUS 1949, Vol. VII, part2*, pp. 1029-1030.

21) 이춘근,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2, 206-207쪽.

22) 앞의 책, 219쪽.

요한 주요 합의를 이뤄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가능한 오래 한강선을 지탱한다. 한국군은 경부 국도 연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미 제24보병사단의 진출을 엄호한다” 등이었다.²³⁾

유엔사가 미 극동군사령부를 모체로 출범하면서 극동군사령부 예하에 미8군사령부와 극동해군사령부, 극동공군사령부를 지상군과 해군, 공군 사령부로 활용했다. 미8군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구로 이전해 7월 13일부터 지상군작전을 통합지휘하게 됐다.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같은 날 대구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이튿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7월 14일 미8군사령부와 육군본부가 합동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통합작전체제를 논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명령을 받으라고 지시한 뒤²⁴⁾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전달된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²⁵⁾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명시한대로 7월 14일을 기점으로 모든 지휘권(command authority over all)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²⁶⁾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7월 17일 미8군사령관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2, 1979, 116쪽.

2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1996, 171쪽.

25)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79, 169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2, 991쪽.

에게 한국군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겨줬다.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전지휘권 이양절차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²⁷⁾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8일 전달한 답신을 통해 모든 지휘권 대신 인사와 군수 분야를 제외한 작전지휘권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 서한과 맥아더 사령관 회답은 7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돼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공식화됐다.²⁸⁾

정일권 총참모장은 육군본부에서 참모회의를 소집해 김홍일 제1군단장과 김백일 제2군단장에게 작전지휘권 이양은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각 사단장에게 일제히 하달했다.²⁹⁾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9월 1일 정책연설에서 한국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통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화답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6)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권 이양에 관한 서한을 작성해 우선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보여주고 견해를 청취했다. 정일권 총참모장이 “우리 국군의 자체 편제라든지, 인사 문제는 절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전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불편도 각오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문제가 왜 없겠나. 나도 그 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불편을 견뎌라도 그들과 작전을 원만히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170-171쪽.

27) 김명기, “국제법상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공한의 유효성”, 『육사논문집』15, 1976, 314쪽.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미 군사관계사』, 471쪽.

29)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78쪽.

3.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가.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경 비원(祕苑)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다 경무대경찰서장³⁰⁾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상황을 보고 받고 즉각 경무대로 복귀했다.³¹⁾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초로 전황을 보고 받은 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명령했다. 그는 신성모 장관의 보고를 접하면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입을 위한 전시외교 카드를 선택했다.

이어 오전 11시 35분 경무대를 예방한 무초 주한미국대사와의 대담에서 “10일 이내에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 모두가 일어나 막대기와 돌맹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는 총력전 의지를 내비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제2의 사라예보가 되는 것을 피해왔지만, 당시 위기가 한국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발 더 나가 김일성이 먼저 38선을 파

30)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경무국(경찰청 전신) 산하 경위부가 이승만 대통령 호위와 관저 경비를 담당했다. 그러다 1949년 2월 경무대경찰서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이관했다. 같은 해 12월 내무부 훈령으로 경호 규정을 제정 하면서부터 ‘경호(警護)’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폐지됐으며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한다. 경찰청, 『경찰 50년사』,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106-107쪽.

31) 프란체스카 도너 리, 조혜자 옮김,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2010, 22쪽.

기했으니 전쟁을 이용해 한반도 통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대응 구상은 이날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장면 주미한국대사와의 긴급전화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황당한 어조로 “북한 적군이 탱크까지 가지고 대거 침입해 국운이 위급하니 즉시 **미 대통령과 유엔에 호소해** 구국의 방도를 강구하라”³²⁾고 명령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성에 따라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곧바로 미국 대통령과 유엔을 대상으로 원조요청 작업에 착수했고, 실제로 유엔 안보리와 백악관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면 주미한국대사 이름으로 제안된 「유엔 총회 및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한국 국회에서 채택됐고,³³⁾ 미 국무부에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유엔 결의안 작성에 반영됐다. 수신 대상을 미 대통령과 유엔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대통령의 지시에 전시외교의 핵심 사항이 담겨 있었고, 유엔 역사상 최초의 전투사령부 창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유엔의 집단안보체제 특성과 슈퍼파워로 떠오른 미국의 힘을 이용해 슬기로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다시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서울 천도론’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했다.³⁴⁾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도 (본인은) 떠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승만

32) 허동현,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분도출판사, 1999, 96쪽. 굵은 글씨체는 필자 강조.

33)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광명인쇄공사, 1971, 341쪽.

34) 온창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수도 대전 이전 발언을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였다고 설명했다.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 출판부, 2006, 125쪽.

대통령은 6월 26일 새벽 3시 일본 도쿄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발발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따졌고,³⁵⁾ 4시 30분 무초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극동군사령관과 참모장에게 한국군에 필요한 전투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5시에 이승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애치슨 국무장관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통보하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³⁶⁾

장택상에 이어 2대 외교사령탑에 오른 임병직 외무장관 역시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며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장면 주미한국대사와 미 국무부, 국방부, 맥아더 극동군사령관, 트리그브 리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전화를 돌려 북한의 남침 소식을 알리고 신속한 원조를 요청했다. 임병직 장관은 6월 26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기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³⁷⁾

경무대 비서 민복기와 고재봉, 황규면, 그 밖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6일 외부원조 요청, 즉 대미 교섭에 바빠서 다른 일을 돌아볼 경황이 없었다. 심야 국무회의가 열렸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³⁸⁾ 당일 행적으론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에 잠시 들러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35) 이승만 대통령은 전속 부관이 맥아더 사령관을 깨울 수 없다고 전화 연결을 거부하자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 사람씩 죽어갈테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라고 호통을 쳤다. 놀란 전속 부관이 전화연결을 하자 맥아더에게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오. 당신 나라에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오.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라고 무섭게 항의했다.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23-24쪽.

36)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 VII, pp. 147-148.

37)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45쪽.

38)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162쪽.

한편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시상황을 체크했다.

북한의 전면도발 소식을 접한 국회는 6월 26일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수습을 논의했으나 정부 당국조차 사태의 진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국회는 우선 유엔 및 미국 정부에 보낼 “6·25사변은 북괴의 불법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 사태임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³⁹⁾

대한민국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메시지」 2건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이름으로 각각 작성된 각각의 「메시지」는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호칭과 용어를 다르게 사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오전 1시 주미한국대사관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일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우긴 하나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즉각 장면 주미한국대사와 함께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⁴⁰⁾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과 하원과, 유엔에 보내도록 승인한 “북한의 침략을 패배시키는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미국은 6월 29일 전쟁발발 이후 처음 개최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 정례회의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39) 국회 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340쪽.

40) 헤럴드 노블, 박실 역,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 이승만·미대사관·워싱턴을 잇는 외교내막』, 정호출판사, 1983, 40쪽.

“우리는 이런 공격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실을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의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이런 사실을 유엔에 보고 하는 일이 우리 최초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이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전체의 견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회의는 6월 25일(미 동부 시각) 소집됐다. 그 후부터는 한국에서의 모든 행동은 유엔의 관할 아래 움직이게 됐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털어놨다.⁴¹⁾

트루먼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월요일(6월 26일)까지 한국으로부터 타전된 보고서들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도착한 메시지 중에는 국무부 전보 양식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원조요청 메시지(One from Syngman Rhee asking for help)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이날 오후 이승만 대통령의 긴급 원조요청 메시지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다.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날 오전 국무부에 도착한 국회의 원조 메시지를 휴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호소문을 나에게 가져온 한국 대사는 의기소침해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직전이었다”고 전달 당시의 백악관 상황을 설명했다.⁴²⁾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이 대통령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6월 25일 조조(早朝)를 기해 북한 공산군대는 남한에 대한 무력 침략을 개시하였다. 귀하 및 미합중국 하원은 우리 국민이 오늘과 같은 사건을 예기해 동방에서 민주주의 보루를 확보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군을 창설한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귀하에게 우리들

41) Paige, *The Korean Decision*, pp. 98-99; *New York Times*, June 29, 1950, p.10.

42) Raymond H. Geselbracht, *The Memoirs of Harry S. Truman : A Reader's Edition*(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19), pp. 553-554.

을 해방하고 우리 공화국의 수립을 위해 귀하가 준 요긴한 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용감한 전투를 전개해가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당면해 우리들은 귀하의 가일층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이러한 세계평화 파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시에 유효하고 적시적인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⁴³⁾

Beginning in the early morning of 25 Jun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began armed aggression against the South. Your Excellency and the congress of US are already aware of fact that our people, anticipating an incident such as today's , established a strong national defense force in order to secure a bulwark of democracy in the east, and to render service to world peace. We again thank you for your indispensable aid in liberating us and in establishing our Republic. As we face this national crisis, putting up brave fight, we appeal for your increasing support and ask that you at same time extend effective and timely aid in order to prevent this act of destruction of world peace.⁴⁴⁾

이처럼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발송해 6월 26일 오후 8시 2분(미 동부 같은 날 오전 6시 2분) 국무부에 착신된 전문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트루먼 대통령의 표현처럼 소극적이고 감성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미 대통령과 하원에 보낸 호소문의 영문 번역본이라고 소개했다. 전문은 “오늘(6월 26일) 아침 평소보다

43)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 외교의 20년』, 318쪽.

4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Ⅲ, pp.167-168.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국회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유엔 총회에 지원을 호소했으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제헌 헌법 제51조는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2조는 국회는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해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다시 말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외교 안보 부처에 외국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호소문은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국회는 호소문의 주체가 아닌 승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2대 국회는 제7회 회기(1950.6.19-6.27)⁴⁵⁾의 경우 개회 직후에 해당하는 1차(6월19일)와 2차(6월20일) 본회의 속기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중한 자료들이 모두 전쟁으로 분실되거나 훼손됐다. 서울을 떠나 부산에 정착하고 한 달 만에 개최된 제8회 회기(1950.7.27-11.25)부터 제대로 운영됐기 때문에 개전 초기의 국회 본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대한민국 국회의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

북한의 전면도발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국회는 6월 25일이 일

45) 제7회 회기(6.19-27)는 6월 19일(제1차 본회의)과 20일(제2차)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21일은 임시 장충(獎忠) 공휴일로 휴회했다. 22일(3차) 상오 10시 정각에 속개됐으나 23일(4차)과 24일(5차)에 이어 25일 전쟁 소식을 개회되지 못했다. 26일 제6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전체 9일 회기 중 실제로 7일 본회의가 열린 셈이다.

요일이었고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6월 26일 오전 11시 신익희 의장의 사회로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백성욱 내무부 장관,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만이 출석해 전황을 보고했다.

신성모 장관과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군의 고층은 명령이 없어서 38선을 넘어 공세작전을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만약 공세를 취한다면 1주일 이내에 평양을 탈환할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군부의 지도부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비현실적 발언을 내뱉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상황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⁴⁶⁾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당시까지 수차례 반복됐던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도발행위 정도로 간주했었으나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성모·채병덕 보고와는 반대로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⁴⁷⁾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적의 침공을 받고 있는 38선 지역의 군경과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문단 파견을 결의한 것이었다. 대

46)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튿날 아침 만난 황성수 의원(용산 갑, 무소속)에게 어제 국회에서 한 보고는 군기라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런 거짓말을 처음 했다”면서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6)「가장 길었던 3일」, 『중앙일보』, 1970. 04.13.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서울신문사, 1977, 613쪽: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요지)

- ①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군사비 지출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 ② 유엔과 미 의회 그리고 미 대통령에게 message를 보낸다.
- ③ 38°선 지역에서 전투 중인 군경과 주민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파견한다.
- ④ 대미무기대책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한다.
- ⑤ 물심양면으로 행정부에 호응하는 동시에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 국가의 안정을 기한다.

미무기대책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며 군사비 지출을 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오후 2시 속개한 국회는 장택상 부의장 사회로 비밀회의를 열어 유엔 및 미국 의회, 대통령에게 “6·25사태는 북괴의 불법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 사태임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동시에 정부에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돼 26일 오후 8시 국군 7사단 사령부가 주둔한 의정부가 침공 당하자 국회는 27일 새벽 2시 각 의원들에게 긴급비상소집을 통보해 4시경 개회했다. 수도 사수론과 수도 철수론 공방 끝에 원세훈 의원⁴⁸⁾의 긴급 동의로 “수도 사수”를 결의하고 1시간 만에 해산했다.

수도 사수의 문안 작성은 신익희 의장에게 일임됐으며, 의장실에서 신익희 의장과 사무총장, 이충환 의원(충북 진천, 무소속)이 문안을 작성했다. 문안을 작성해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이 경무대로 달려갔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수원으로 피신한 이후였다.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을 찾아가 단잠 자는 것을 깨워 경과를 설명하고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로 돌아왔고,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헤어졌다. 국회가 유엔한국위원단을 통해 유엔 총회에 전달된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월 25일 조조를 기해 북한 공산 군대는 38도선 전면에 걸쳐 무력침략을 개시하였다. 자위를 위해 우리들의 용감하고 애국적인 육해군은 영웅적인 방위작전을 전개하였다. 반란군의 이 야만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3천만 국

48) 임시정부 위원 출신 원세훈 제2대 국회의원(서울 중구甲, 민족자주연맹)은 6·25 전쟁 중 납북됐다.

민⁴⁹⁾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침략에 대한 우리들의 방위전투가 우리들 국민과 정부의 불가피한 반발임을 인식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들은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애호 국민들을 위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호소한다.⁵⁰⁾

Beginning early morning 25 Jun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began armed aggression throughout 38th parallel area. For self protection our brave and patriotic army and navy opened heroic defense operations. This savage and unlawful act of rebel force is commission of unpardonable sin. We, representing 30 million Koreans, hope UNGA realized our defensive fight against aggression is inevitable reaction of our people and government. We also appeal for you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peace loving people of world.⁵¹⁾

다. 대한민국 「메시지」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국가 비상사태를 직감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1시(미 동부 6월 24일 오후 11시) 한표욱 주미참사관에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 미국의 원조가 시급히 도착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지시했다.⁵²⁾ 국제

49) 195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2천51만 명, 북한 인구는 1천54만 명으로 각각 추계됐다. 국회가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3천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필자 주

50)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 외교의 20년』, 317쪽.

51)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Ⅲ, pp.167-168.

52) 한표욱,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 1984, 76쪽.

감각이 뛰어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대거 남침 상황을 보고 받고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들여 면담한데 이어 취한 2번째 전시조치였다.

제헌 헌법 제57조는 내우와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남한의 국가와 외교 그 자체였다.⁵³⁾ 또 이러한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⁵⁴⁾

〈표 2〉 안보리 결의문 작성 경위

제목	이승만-장면 통화 내용	대한민국 「메시지」 국회 통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S/1511)
일시	6월 25일 오후 1시	6월 26일 오후 2시 이후	6월 28일 오후 1시 50분
내용	“미 대통령과 유엔에 호소해 구국의 방도를 강구하라”	미국 대통령·하원 및 유엔 총회 대상	대한민국에 무력 제공 권고
비고	전시외교의 첫 구체화	대한민국주미국대사 작성	“대한민국 호소에 유의해”

출처: 유엔 연감 등을 참고해 필자 작성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받은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미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원조의외

53)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160쪽.

54)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1&lsId=001444&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검색일: 2024.1.6.)

교'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제의에 따라 6월 25일(현지시간) 개최된 473차 회의에 장면 주미한국대사의 참석을 허용했다.⁵⁵⁾ 한국과 중국, 쿠바 대표들은 안보리가 침략행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대표는 유엔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기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태가 특별한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⁵⁶⁾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유엔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원해 달라는 메시지를 제안해 6월 26일 오후 2시 속개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무초 대사가 월요일 아침에 이들 호소문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오후에 주미 한국대사 장면이 백악관으로 가서 이 호소문의 사본을 전하고 또 몇 시간 전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로 전달한 다른 호소문의 내용을 전하였다”고 밝혔다.⁵⁷⁾

하지만 혼각을 다투는 전쟁 상황에서 채택된 의결들에 대해 국회 절차상 업무 처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됐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미국대사’ 명의로 접수된

55)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6월 26일(미 동부 6월 25일) 워싱턴 D.C.에서 뉴욕 유엔본부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유엔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술회했다. 연설문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평화스러운 일요일 새벽 적의에 찬 북한 괴뢰군은 여러 지점에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서 사면팔방으로 공격을 개시해왔습니다....(중략)...본인은 국제평화에 대한 이 위협을 당장 제거해 줄 것과 이 침략자들로 하여금 모든 공격을 즉각 중지하고 우리 영토로부터 철퇴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줄 것을 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합니다.(하략)...” 허동현,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96쪽.

56)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221.

57)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 (상), 삼아인쇄공사, 1990, 76쪽.

「유엔 총회 및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 문건(의안번호 020715)은 1950년 7월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⁵⁸⁾ 해당 서류는 업무상 미국에 체류 중인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서울 국회를 방문해 접수하는 대신 제3자에 의해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2대 국회(1950-1954) 제8회 회기에 제출된 문건은 접수과정에서 기입하도록 요구되는 제안 일자와 문서 내용이 빈칸으로 남아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날짜, 회의명, 회의록 역시 확인되지 않으나 1950년 7월 4일 ‘원안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사(國會史)는 2대 국회의 안건처리 상황에 대해 “본 회기는 6·25동란으로 인해 회기가 9일에 불과해 안건심의를 위한 시일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와 제2차 회의의 속기록 이외에는 속기록 원고가 전부 분실 당함으로써 안건처리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⁵⁹⁾ 다시 말해 메시지 채택 과정의 결정적 자료인 6월 26일 제6차 본회의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보된 자료만으로 안건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제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해 “북괴(북한)의 불법남침을 규탄하고 유엔과 미국 정부에 긴급원조를 요청하며 행정부에 급속한 사태수습을 요청하는 메시지 채택에 관한 결의안 및 대정부 건의안, 어떤 일이 있어도 수도 서울은 내놓을 수 없다는 수도 사수에 관한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국회사는 강조했다.

6월 19일 개원한 제2대 국회는 6월 27일 새벽 피난을 떠났기 때문에 이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이 국회의 ‘수도 사수 결의 내용을 전달하기

5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8247>) (검색일:2024.01.05)

59)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341쪽.

위해 경무대를 방문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피난을 떠난 이후였다. 이 대통령의 피난 소식은 국회에마져 통보되지 않았다. 신익희와 조봉암은 할 수 없이 국회로 돌아와 새벽 5시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6월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메시지는 주한미국대사관을 경유해 같은 날 오후 8시 2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 도착했다.⁶⁰⁾ 국회를 속개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국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전달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해당 메시지를 바탕으로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인 유엔 안보리 권고안을 작성했다.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전 미국 국회와 유엔에 보내도록 승인한 북한의 침략을 패배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⁶¹⁾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의 미 국무부 전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참고로 7월 18-21일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주한미국대사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통령과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언쟁을 벌였다.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서 “우리 한국 국민은 공산군을 우리의 본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으로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빼자고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60)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Ⅲ, pp.167-168.

61)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04쪽.

이다.…(중략)…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이 19일 사인됐다.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편지내용을 전문⁶²⁾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우편을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초 주한미국대사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본을 건네주고 오리지널은 파우치 편으로 장면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 …(중략)…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대통령의 서한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하면서 한국전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전달했다.⁶³⁾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6월 25일 오전 서울 경무대 면담부터 대전과 수원, 부산 등 피난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유엔군사령부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무대와 백악관 사이에 ‘무초 핫라인’이 원활하게 가동돼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던 것으로 평가된다.

트루먼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보고서 전달 방법과 경위, 전달자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트루먼 대통령 표현대로 국무부 전보 양식이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주한미국대사관과 국무부-백악관 지휘체계를 통해 전문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62) 페이지는 1950년 여름 한국에서의 국제통신 수단으로 주한미국대표부(American Mission in Korea) 공식 채널과 상업용 무선전신 시설, 국제무선전화 등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제한된 시간에 이용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Paige, *Korean decision*, p.85.

63)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45-49쪽.

4. 대한민국 「메시지」 의미 분석

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파급 효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6월 말까지 총 4차례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지 2시간 만에 개최된 블레어하우스⁶⁴⁾ 제1차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사태의 자세한 윤곽부터 토의하자”면서 “당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으니 기탄없이 의견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투지역으로 정보를 수집할 군사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존 처치 준장의 인솔 하에 장교 13명과 병사 2명을 한국에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표 3〉 美 중요회의 일정과 의제

	제1차 블레어하우스회의	제2차 블레어하우스회의	정례 국가안보회의	긴급 국가안보회의
개최 시기 (한국시간)	6.26. 09:45-13:00	6.27. 11:00-12:00	6.29. 04:30-	6.30 07:00
장소	블레어하우스	블레어하우스	백악관	백악관
참석자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국무차관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국무차관대리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러스크, 해리만, 델레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러스크, 해리만, 델레스
주요 의제	군사시찰단 파견	38선 이남 지역에 美 해·공군 투입 결정	소련의 개입에 따른 행동방침 준비	美 해·공군 작전 38선 이북으로 확대 지상군 투입 결정

* 출처: 유엔 연감 등으로 바탕으로 필자 작성

64) 백악관은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맞은 편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27일 오전 11시(미 동부 26일 오후 9시)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를 열렸고,⁶⁵⁾ ‘서울이 실함(失陷)될 위기에 처했다’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상황보고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블레어하우스 회의가 하루 만에 재소집된 이유는 전날 밤 내린 결정의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한국군 전면적 붕괴가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서울 함락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정세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모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유엔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결의는 변함이 없었다.⁶⁶⁾ 세계대전 회오리에 말려들지 않고 소련의 도전에 대해 한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의 결정적인 핵심이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해·공군 사용에 대해 모든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건의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작전지역이 38도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애치슨 건의를 수락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튿날 오후 안보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국무부가 (제82호에 이어) 또 다른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안보리 분위기는 심지어 스웨덴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설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히커슨 유엔담당 차관보가 이 자리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이 북한의 불법침략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S/1508/Rev.1)을 낭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블레어하우스 2차 회의에서 미국이 공식으로 한국군 지원을 위해 해·공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설명했다.

6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Jessup)”, *FRUS*, Vol. VII, Korea, pp.178-183.

66) Ambassador Jessup, Interview, July 28, 1955.

유엔 안보리가 27일 오후 3시 15분(미 동부 현지시간) 제474차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S/1503, S/1505/ Rev.1, S/1507 등 3개의 보고서가 도착했다.⁶⁷⁾ 6월 26일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된 S/1503은 “위원단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거나 유엔한국위원단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북한군의 공격 중단과 철수에 대한 논의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4 용지 4장 분량의 S/1505/ Rev.1은 14개 조항에 걸쳐 6·25 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S/1507은 북한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총력전을 벌이는 반면 한국은 38선 전역에서 방어전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미국 대표의 연설이후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주도록 호소했다. 미국의 국무부 라인이 제출한 제83호는 28일 오후 1시 50분(미 동부 27일 오후 11시 50분)에 통과됐다.

유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은 총 6개 문단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다섯 번째 문단에 등장했다. 제83호 결의안은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국제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라고 명시했다.

이 대목에서 한국 국회가 보낸 메시지 문구들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과 안보리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

67)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222-224.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사 창설의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에 우리 정부의 활동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이어 마지막 문단은 “국제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제시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대한민국 메시지-국무부 초안-안보리 결의안 비교

	대한민국 메시지	미국 국무부 초안	유엔 안보리 결의
문서 제목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26, 1950	S/1508/Rev.1	S/1511
영어 원문	We also appeal for you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s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s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armed aggression	armed attack	armed attack
	rebel forces	forces from North Korea	forces from North Korea
수신 및 승인 날짜	1950.6.26.	1950.6.27.	1950.6.28.
작성 기관	한국 국회	미국 국무부	유엔 안보리

* 출처 : 유엔 연감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나. 근거 없는 ‘북침설’에 반박

북한은 6월 25일 오전 11시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 괴뢰군의 침공 결과 북한 정부가 한국에 대해 전쟁선포를 했다”고 보도했다.⁶⁸⁾ 김일성은 이날 오후 1시 35분 라디오 연설에서 한국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옹진반도 위쪽 해주지역을 아침에 공격해 북한이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깜짝 놀란 세계는 북한이 서울의 “괴뢰” 정부군에 의해 반역적인 침략을 받았으며, 그래서 자위로서 마지못해 반격한 것으로 알게 됐다.

개전 초기 연합신문사 최기주 기자가 보도하고 육군본부가 발표한 ‘해주 점령설’이 대대적으로 배포됐다. 최 기자는 전쟁 발발 당일 옹진을 현장 방문해 취재 중이었고, 백인엽 제17연대장을 만나고 곧바로 서울로 귀환했다. 김현수 국방부 보도과장을 만나 백 연대장이 “서울에 가거든 이 말 한마디만 전해주슈. 백인엽은 부대를 지휘해 해주로 진격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북침설’로 둔갑해 한국은 물론 서방세계에까지 건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메시지를 통해 ‘북침설’ 주장에 쐐기를 박고 북한의 남침 행위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6월 26일 메시지에서 ‘남쪽을 향한 무력침공’(armed aggression against South)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회는 ‘38선 전역에 걸친 무력 침공’(armed aggression throughout 38th parallel area)이라고 밝혀 38선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미국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합의한 38선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6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2), p. 21.

국회는 이어 ‘자위(self protection)’, ‘영웅적 방어작전(heroic defense operations)’, ‘침략에 대한 방어전투(defensive fight against aggression)’ 공격이 아닌 방어에 초점을 맞춘 용어를 선정해 북한의 침략성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앞서 발표한 결의안 82호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38선 이북으로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6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서(S/1495)를 보내 북한군의 침공 사실을 알렸다.⁶⁹⁾ 미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평화의 파괴이자 침략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제82호는 첫 번째 문단에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유엔 헌장 제7장의 ‘침략’(aggression)과 ‘평화의 위협’(threat of peace), ‘평화의 파괴’(breach of peace) 가운데 ‘평화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는 당초 마련한 결의문 초안에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은 부당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이집트와 노르웨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평화의 파괴’로 절충됐던 것이다.⁷⁰⁾

하지만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 역시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침략과 평화의 파괴가 아닌 평화의 위협을 고집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침략’과 ‘평화의 위협’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결과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평화의 파괴로 절충작업이 이뤄졌다.

다. 부당성 강조해 우호적 여론 조성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반란군의 야

69)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221.

70)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81쪽.

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savage and unlawful act of rebel force)”,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unpardonable sin)”, “불가피한 반응(inevitable reaction)”이라며 북한 무력침공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북한의 명분 없는 침공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해 국제사회로부터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메시지는 북한군을 가리켜 ‘북한 공산당 군대(North Korean Communist Army)’에 이어 ‘반란군(rebel force)’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에 제83호 결의안은 한국에 대해 정식 국호(the Republic of Korea)와 함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북한 당국(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이라는 용어를 구사했다.

5. 맺음말

6·25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창설된 유엔사는⁷¹⁾ 전쟁의 자유진영 측 주체로서 공산군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유엔사는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관리감독하고 유사시 전력제공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 둘레길 조성사업 등은 대표적 사안들로 꼽을 수 있다.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누가 먼저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71) 유엔사는 7월 25일 오전 8시 50분 특별발표를 통해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25일 정식으로 도쿄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313쪽.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법학자 김명기는 우리 정부의 지원 요청에 근거해 유엔이 군사력을 파견할 조치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⁷²⁾ 유엔 회원국들이 6·25전쟁에 개입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장 출신 로잘린 히긴스는 “비록 유엔이 일본 도쿄에 지휘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을 주재국(host state)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했다”고 선언했다.⁷³⁾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이 정부와 국회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하원에,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한국위원단을 통해 유엔 총회에 다른 메시지를 각각 발송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1948년 이후 유엔과 창구 역할을 담당한 유엔 기구를 통해 한국의 비상사태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던 것이다.⁷⁴⁾

유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에 대한 호소’(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라고 명시하면서 호소 문구를 그대로 결의안에 반영했다. 국회가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평화와 안전을 확

72)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주한미군의 구별”, 『고시계』33권 7호, 1988, 111쪽.

73)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1946-1967 Document and Commentary II Asia*(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211.

74) UNCOK는 1950년 6월 25일 오후 11시(미국 동부시각)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쟁발발 상황을 최초로 보고했으며(S/1496),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82호는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38선 이북으로 철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먼저 간밤에 38선에서 도발했다는 평양방송 발표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한 이승만 대통령 및 임병직 외교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져 국제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안보리 시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시 말해 유엔한국위원단이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로 통하는 ‘핫라인’ 역할을 담당했다.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immediate and effective steps)를 취해 달라”는 문구가 제83호 결의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반영됐던 것이다.

다시 말해 6월 26일 유엔 총회에 전달된 대한민국의 메시지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해달라고 권고한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메시지는 결정적 시기에 미국과 유엔의 지지와 분투를 이끌어내 유엔사 창설에 분수령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한국 정부의 위기탈출 노력은 미국의 조율 과정을 거쳐 안보리 결의안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한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원요청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엔사 창설에 앞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발 빠르게 이양했다. 전시지도자로서 무력 발동에 따른 통수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국가 총역량을 전승 획득에 집중시키도록 조직화하는 역량을 발휘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을 전제로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한국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유엔사 창설 작업이 순풍을 타고 진행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사 설립 과정에서 ‘외교의 귀신(鬼神)’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 통과에 기여하고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발 빠르게 넘겨주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고 주일미군 병력 중 제24사단 스미스 대대가 참전한 7월 1일까지 한국군이 교전의 주체였다. 유엔군이 가세한 이후에도 한국군이 지상군 전체 병력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1953년 휴전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복진명령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승만 대통령을 연금,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른바 에버레디 계획(Plan Eveready)을 준비하는 등 한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엔에서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대한민국과 유엔사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사는 사령관 예하에 부사령관, 참모장, 부참모장 등으로 구성된 지휘부와 참모부 역할을 수행하는 군정위 비서처로 구성된다. 유일한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 부참모장 겸 군정위 수석대표를 맡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구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유엔사 지휘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에서 한미 간 의사소통 채널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⁷⁵⁾

판문점 출입절차와 대성동 선전마을 대민 업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감안할 때 유엔사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 지휘부와 참모부에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⁷⁶⁾ 이에 따라 미군 장성이 아닌 제3국 장성에게 개방된 유엔사 부사령관 자리에 한국군 장성 임명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한반도 안보의 양대 축이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재활성화된 유엔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군 출신 미래연합사령관과 미군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 긴밀한 협조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⁷⁷⁾

한미동맹 70주년을 지나면서 한국과 미국이 시대 변화에 따른

75)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의 쟁점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64-65쪽.

76) 장광현, 앞의 논문, 206쪽.

77)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209쪽.

상호간 역할 분담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서 유엔사 내 한미관계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이 스스로 주재국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전력제공국(sending state) 대우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드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원을 받는(supported) 약소국에서 지원을 주는(supporting)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제무대 현실을 감안할 때 유엔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서울신문사, 1977.
_____, 『한국전쟁사』 2, 서울신문사, 1979.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8, 동방문화인쇄사, 2004.
- 김영호 외 4인,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2.
-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_____,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지도자 역할」, 『이승만과 6·25전쟁』, 연
세대 출판문화원, 2012a.
_____, 『북한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 살림, 2015.
<https://doi.org/10.978.89522/32762>
-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 출판부,
2002.
-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 박홍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1950) : 과정과 배경」, 『유엔과 한국
전쟁』, 리북, 2004.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서울신문사, 1979.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政夫),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
과정』, 청계연구소, 1986.
-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
대 출판부, 2006.
- 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외무부, 1967.
- 이춘근,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
판문화원, 2012.
-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_____,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1996.
- 프란체스카 도너 리, 조혜자 역,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서울: 기파
랑, 2010.

- 한표욱,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 1984.
- 허동현,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분도출판사, 1999.
- 해럴드 노블, 박실 역,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 : 이승만·미 대사관·워싱턴을 잇는 외교내막』, 정호출판사, 1983.
-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상), 삼아인쇄공사, 1990.
-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The Penguin press.
- Oliver, Robert T. 1954.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 Dodd and Mead Company.
- Geselbracht, Raymond H. 2020. *The Memoirs of Harry S. Truman : A Reader's Edition*. Columbia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Higgins, Rosalyn. 1970.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1946-1967 Document and Commentary II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 Paige, Glenn D. 1969.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 Roy E. Appleman. 19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 Time*. July 17, 1950.
- Truman, Harry S. 1965.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New York: Signet Books.
-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2. 논 문

- 김명기, “국제법상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공한의 유효성”, 『육사논문집』15, 1976.

-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주한미군의 구별」, 『고시계』33권 7호, 198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161117>
- ,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과 북침설의 부당성 근거(하)”, 『국제문제』31권 5호, 2000.
- 남정옥, “6·25는 무엇이었나? : 전쟁조건 고루 갖춘 김일성 악조건 투성이의 한국과 이승만”, 『한국논단』272, 2012b.
-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20.
-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미동맹의 쟁점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진옥, “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행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화랑대 논문집』12집 2권, 2019.

3. 인터넷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4년 01월 05일)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8247>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4년 01월 06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1&lsId=001444&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 유엔사 공식 홈페이지(검색일: 2024년 01월 06일)
[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년 01월 23일)
<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Q1=total&query1=%EC%9D%BC%EA%B4%91%20%EC%A0%88%EC%95%BD&x=0&y=0>
-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FRUS*, Vol. VII, Korea.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26, 1950.

<Abstract>

The Role of Korea in the Establishment of the UNC “Focused on the June 26th, 1950 Messages”

Moon, kwan-hyun(Yonhap news)

This study is written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pecialist President Syngman Rhee led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by focusing on Wartime Diplomacy targeting the U.S. and the U.N. instead of focusing on insufficient troops and conventional weapons. As a result, a breathless diplomatic war unfolded at the U.N., the U.S. Embassy in Korea, the Far East Command, and the Korean Embassy in the U.S., raising the clash between the two Koreas to a showdown between the U.N. Command and Communist Forces. Launched one month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NC successfully signed an Armistice Agreement by defeating communist aggression as the main agent of the war.

In the process, the "Message" s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U.S. Presid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June 26, 1950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draft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the establishing of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83 highlighted the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achievements in the text, saying,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ccordingl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subject, delivery process, and ripple effect of the "Messag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June 26. If the efforts and sacrif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re hidden by the lead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days of UNC history, are properly evaluated, it is expected to help strengthen

its status in UN history in the future

Keywords: Korean War, Korean Messag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United Nations Command, Operational Command